

# 퇴직연금제도의 재무건전성규제 비교분석

## Comparative Analysis of the Solvency Regulation on the Retirement Pension

류건식\*

Ryu Keon-Shik

이경희\*\*

Lee Kyong-Hee

본 연구는 근로자의 수급권 보호차원에서 미국, 일본, 영국 등 선진국의 퇴직연금 재무건전성 규제를 비교분석한 후 퇴직연금 재무건전성규제 현황 및 문제점 등을 토대로 사전적 및 사후적 재무건전성 규제 개선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분석결과, 연금재정의 안전성확보를 통한 근로자의 수급권 보호차원에서 현행 퇴직연금 재무건전성 규제의 개선이 시급히 요구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즉 사전적 재무건전성 규제측면에서는 부담금 산출, 최저적립금 산출, 최대적립금 산출 목적에 따른 계산기초율 설정이 필요하며, 개별회사의 특성을 고려한 적립방식(준비금평가방식)을 선택할 수 있도록 계산기초율의 차별화, 연금재정 선택 관련 규정의 보완이 필요하다. 또한 사후적 재무건전성 규제측면에서는 무엇보다도 연금재정의 검증차원에서 연금부채 산정에 대한 계리적 기준 및 절차 마련이 중요하다. 또한 적립금 부족시 시정조치 측면에서는 부담금각출 의무화, 각출비율수준에 따른 상각기간 설정, 연금금부액의 감액 등과 같은 시정조치 규정이 보다 체계적으로 정비되어야 하며, 특히 사용자가 각출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법적제재조치사항(과태료부과, 패널티세 부과 포함)의 신설이 요구되고 있다.

※ 국문색인어 : 사전적 재무건전성 규제, 사후적 재무건전성 규제, 시정조치, 퇴직연금

\* 보험개발원 보험연구원 선임연구위원 (keon@kiri.or.kr)

\*\* 보험개발원 보험연구원 수석연구위원 (khlee@kiri.or.kr)

## I. 서론

퇴직연금제도 도입의 궁극적인 목표는 퇴직연금제도로의 전환을 적극 유도하여 근로자의 안정적인 노후소득을 보장하는데 있다. 따라서 근로자의 퇴직시 퇴직금부를 지급하는데 충분한 재무건전성을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왜냐하면 일정수준의 재무건전성 확보 없이는 근로자의 수급권보호는 요원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서도 재무건전성 확보에 관한 사항을 퇴직연금규약에 반드시 명시하도록 규정하였으며 또한 재무건전성 감독체계로써 퇴직연금사업자의 연금계리 전문인력 확보, 노동부의 사용자 및 퇴직연금사업자 감독권, 금융위원회의 퇴직연금 사업자 감독권 등을 두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현행 퇴직연금 재무건전성 규제는 근로자의 수급권 보호차원에서 볼 때 미국, 일본 등 선진국에 비해 많은 개선여지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현행 퇴직연금제도상에 나타나고 있는 재무건전성 규제제도의 문제점을 체계적으로 비교분석하고 이를 기초로 재무건전성 규제 방안을 제시할 필요성이 있다. 문제는 재무건전성 규제를 사전적 재무건전성 규제(계산기초율 및 적정한 재정방식 선택)와 사후적 재무건전성 규제(연금재정의 검증 등과 같은 지급능력 검증)중에서 어디에 보다 초점을 맞추어 개선방안을 검토하느냐에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최근 선진국의 재무건전성 규제 패턴이 사전적 재무건전성 규제에서 사후적 재무건전성 규제로 점진적으로 전환되고 있음을 감안, 사후적 재무건전성 규제에 보다 초점을 맞추어 재무건전성 규제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즉 재무건전성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적립금과 책임준비금이 각각의 개별 관계속에서 나타나는 사전적 재무건전성 규제보다 상호연계 속에서 나타나는 사후적 재무건전성 규제, 즉 연금재정의 검증체계, 적립금 및 최소책임준비금의 평가, 적립수준 및 과거근무채무상각, 적립과부족시 시정조치, 연금재정의 재계산 등에 대한 비교분석과 이를 통한 개선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제Ⅱ장에서는 퇴직연금 재무건전성 규제를 사전적 재무건전성 규제와 사후적 재무건전성 규제로 이원화하여 특징과 재무건전성 규제관련 국내외 선행연구를 살펴보았다. 또한 제Ⅲ장에서는 미국, 영국, 일본 등의 책임준비금 평가체계(사전적 재무건전성규제) 및 사후

적 재무건전성 규제가 어떠한 프로세스하에서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그리고 제Ⅳ장에서는 우리나라의 재무건전성 규제 현황 및 문제점을 살펴 보고, 이를 기초로 제Ⅴ장에서 재무건전성 규제의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sup>1)</sup>.

## Ⅱ. 퇴직연금 재무건전성규제 관련 선행 연구

### 1. 재무건전성 규제 체계

퇴직금제도를 퇴직연금제도로 전환하는 가장 큰 목적중 하나는 법정퇴직금제도 시행상 문제점의 하나인 지급보장성을 강화하는 것이다. 특히 확정급여형 퇴직연금 제도는 입사후 수년이 경과한 이후에 발생하게 될 퇴직시의 급여를 지급하는 제도로서 급여지급에 필요한 비용이 다양한 가정하에 산출하여 법적으로 독립된 금융회사에 책임준비금으로 적립하게 된다. 즉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에서 사용자의 궁극적인 의무는 퇴직시 퇴직급여를 지급하는데 있으므로 이에 상응한 책임준비금을 사전에 적립할 필요성이 있다. 따라서 장기부채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는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을 운용하기 위해서는 <표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재무건전성 확보를 위한 다양한 규제가 요구되고 있다.

즉 퇴직연금 재무건전성에 영향을 주는 대표적인 규제대상이 적립금(연금자산)과 책임준비금(연금부채)라 할 때 사전적 재무건전성 규제 측면에서는 적립금과 관련하여 연금자산 평가와 관련된 규제, 책임준비금(연금부채)와 관련하여 연금부채 평가(계속기준 또는 비계속기준)하의 계산기초율규제, 준비금의 적립 등 적립방식 규제 등을 들 수 있다.

1) 이에 퇴직연금사업자에 대한 감독 등과 같은 재무건전성감독(리스크감독 및 전문 인력의 적정성 등)과 연금지급보증공사 등 연금지급보증제도 도입문제에 대해서는 본 연구의 분석대상에서 제외한다.

〈표 1〉 퇴직연금 재무건전성 규제 체계

규제대상 <sup>1)</sup>	재무건전성 규제(사전적) <sup>2)</sup>		재무건전성 규제(사후적) <sup>3)</sup>
적립금 (연금자산)	연금자산 평가 - 시가평가 등		연금재정 검증 적립과부족시 조치 적립기준(적립률) 및 PSL상각 연금재계산 등
책임준비금 (연금부채)	연금부채 평가 - 계속 기준 - 비계속기준	계산기초율 규제 - 적립방식 규제 (준비금의 적립 등)	

- 주: 1) 적립금과 책임준비금은 재무건전성에 영향을 주는 대표적인 규제대상(규제요인)임을 의미  
 2) 사전적 재무건전성 규제는 적립금 또는 책임준비금의 개별·독립적 규제  
 3) 사후적 재무건전성 규제는 적립금과 책임준비금과의 상호관련 규제

이에 반해 사후적 재무건전성 규제, 즉 적립금과 책임준비금과의 상호연계 관련 규제로는 계속기준 및 비계속기준하에서의 연금재정 검증, 적립과부족시의 시정조치, 적립기준(적립률 또는 지급능력비율) 및 과거근무채무 상각, 연금재계산(부담금 재계산) 등과 관련된 규제를 들 수 있다. 이와 같은 재무건전성 규제는 각국마다 다소간의 차이가 있다. 즉 사전적 재무건전성 규제에 초점을 맞추고 있느냐 아니면 사후적 재무건전성 규제에 초점을 맞추고 있느냐는 점에서 차이가 존재할 수 밖에 없다. 다만 최근에는 사전적 재무건전성 규제는 점점 완화하고 있는 반면에서 사후적 재무건전성 규제는 더욱 강화하는 방향으로 전환되고 있다<sup>2)</sup>. 그 이유는 책임준비금(연금부채)에 대비한 적립금(연금자산)을 적절히 보유, 관리하고 있는가를 체계적으로 검증하고 조치하는 것이 연금 운용의 재무건전성 확보차원에서 보다 중요시 되고 있기 때문이다. 즉 연금재정의 상황을 정기적으로 검증하고 적립과부족에 따른 적기시정조치를 취하는 등 일련의 사후적 재무건전성 규제가 강조되고 있

2) 일본, 네덜란드, 미국 등은 퇴직연금자산 운용규제완화(비율규제방식에서 총량규제방식으로의 전환)에 따른 재무건전성 강화 차원에서 대체로 계산기초율과 관련된 규제는 완화하는 반면, 적립비율식(=자산의 현재가치/부채의 현재가치) 재무건전성 규제는 강화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다. 이에 따라 적절한 책임준비금 적립이외에 연금재정의 검증을 통해 재무건전성을 보다 강화하기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 2. 재무건전성 규제 관련 선행 연구

지금까지 퇴직연금 재무건전성 규제와 관련된 선행연구를 보면 국내의 경우 퇴직연금제도의 도입이 일천하여 그다지 많지 않은 실정이다. 퇴직연금 재무건전성 규제와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대표적인 선행연구로는 류건식·이태열(2004)<sup>3)</sup>, 신기철(2003), 이재민(2005)<sup>4)</sup>, 류건식·이상우(2005), 류건식·신문식(2006)<sup>5)</sup>, 이봉주(2007)<sup>6)</sup> 등의 연구를 들 수 있다.

류건식·이태열(2004)의 연구는 연금재정의 적정성 평가체계 측면보다는 연금재정의 건전성 평가체계에 초점을 두고 연금지급상의 건전성 문제 등을 선진국과 비교하여 제시하였다. 즉 연금제도 도입의 초기에는 최저책임준비금제도를 시행하되, 장기적으로는 미국 등과 같은 연금지급부공사의 설립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신기철(2003)<sup>7)</sup>의 연구는 퇴직연금제도의 재무건전성 제고방안이라는 논문에서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의 재무건전성을 제고하기 위한 제반사항을 살펴보고 우리나라의 여건을 감안한 규제 및 감독방안에 대한 정책제안을 하였다. 류건식·이상우(2005)<sup>8)</sup>의 연구는 퇴직연금제도의 연금재정 평가체계를 중심으로 현황 및 문제점을 살펴보았으며 류건식·신문식(2006)의 연구는 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상에서 나타난 수급권 및 건전성 관련 규정을 통해 수급권보호제도와 재무건

3) 류건식·이태열, 『퇴직연금규제감독체계에 관한 연구』, 보험개발원 보험연구소, 2004.7.

4) 이재민, 「퇴직연금의 재무건전성감독모델」, 금융감독원 조사연구실, 2005.6.

5) 류건식·신문식, 「퇴직연금재정의 건전성 평가체계 : 근로자의 수급권보호를 중심으로」, 사회보장연구 제22권제3호(제38집), 한국사회보장학회, 2006. 9.

6) 이봉주 『퇴직연금 지급보증제도의 효율체계에 관한 연구』, 보험개발원 보험연구소, 2007.3.

7) 신기철, 「기업연금제도의 재무건전성 제고방안」, 『노동연구원 전문가포럼자료』, 2003.3.

8) 류건식·이상우, 『퇴직연금제도 재정평가체계에 관한 연구』, 보험개발원 보험연구소, 2005.10.

전성제도의 방향을 거시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이와는 달리 이재민(2005)의 연구는 처음으로 재무건전성 규제와 더불어 재무건전성 감독(연금계리인력의 자격요건)을 포괄하여 재무건전성 규제 및 감독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다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

다음으로 국외 선행연구 중에서 內藤修治(1989)<sup>9)</sup>의 연구는 퇴직연금수리 모형 특성과 이에 따른 보험료의 수준을 비교분석하였다는 점에서 보다 사용자 측면에서의 재무건전성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다음으로 田村正雄(1992)<sup>10)</sup>의 연구는 퇴직연금재정방식을 활용하여 민감도분석을 시안적으로 실시하였다는 점에서 연금재정의 적정성 평가체계 접근방법에 보다 기초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다음으로 日本生命保險文化研究所(1999)<sup>11)</sup>의 논문은 후생연금기금의 전망을 재정방식에 의해 장기추계하고 있어, 연금재정의 적정성 평가체계를 기초로 한 연구에 근접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또한 재무건전성규제 관련 연구로 Helmut Reisen(1997)<sup>12)</sup>, N.G.Terry and P.J. White(1997)<sup>13)</sup> 등의 연구가 있는데, 특히 Helmut Reisen(1997)의 연구는 연금재정의 문제를 연금투자 측면에서 다루었다는 점에서 연금자산 운용과 관련된 재무건전성 규제 연구의 성격을 띠고 있다.

9) 內藤修治, 「年金數理」, 日本保險計理士會, 1989.4.  
 10) 田村正雄, 「年金財政」, 株式會社 社會保險廣報社, 1992.2.  
 11) 日本生命保險文化研究所, 『企業年金』, 1999, p. 80  
 12) Helmut Reisen, "Liberalizing Foreign Investments by Pension Funds: Positive and Normative Aspects", *OECD Working Paper*, January 1997.  
 13) N.G.Terry and P.J.White, "The role of pension schemes in recruitment & motivation : Some survey evidence", *Employee Relations*, Vol.19, No.2, 1997, pp.160~175.

### Ⅲ. 주요국의 재무건전성 규제와 제반 특징

#### 1. 재무건전성 규제 체계

##### 가. 책임준비금 평가

부담금을 각출하여 퇴직연금부채에 해당하는 자산을 사전 적립하기 위해서는 부담금 산출을 위한 적립방식이 요구된다. 현재급여방식(Current Unit Credit Method)과 예측급여방식(Projected Unit Credit Method)과 같은 단위 적립방식 중에서 현재급여방식은 최저적립기준 산정시에, 예측급여방식은 최대적립기준 산출시에 일반적으로 적용하고 있다<sup>14)</sup>. 즉 특정 적립방식만을 사용하도록 규정하지는 않으나 대부분 예측급여방식을 통하여 계속기준하의 책임준비금을 평가(최대적립기준)하고 있는 반면, 최저책임준비금(최소적립기준)을 산출함에 있어서는 발생된 채무를 기준으로 부담금을 계산하는 현재급여방식을 주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2〉 책임준비금 평가 및 규제

국 가	미 국	일 본	영 국
준비금평가	대부분 예측급여방식	수리적으로 타당한 방식 인정	예측급여방식 (최저적립한도: 현재급여방식)
규제강도	없음	최저규제존재	없음
계리사 자율성	크다	일정한 제약존재	매우 크다

14) 2004년 OECD에서 권고한 퇴직연금규제원칙에서도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은 최저적립 기준이나 적정수준의 적립장치가 있어야 한다고 언급하였다. 특히 특정 환경하에서는 일시적인 적립부족을 용인할 수 있으며, 연금부채의 장기적 특성을 고려하여 융통성 있는 최저적립제도의 운용이 필요하다고 권고하였다.

즉 영국은 Pension Scheme Surplus Regulation(1987) 관련 규정에 의해 예측급여방식을 사용하고 있으며 캐나다, 벨기에, 아일랜드, 미국 등의 국가도 예측급여방식을 사용하고 있다. 이에 반해 네덜란드와 스위스에서는 현재급여방식이 사용되고 있으며, 일반적으로 감독규제측면에서 필요한 최저적립기준 산출을 위한 연금부채평가시에는 현재급여방식을 주로 사용하고 있다.

외국의 경우 기금적립과 관련하여 감독당국에서 적립방식 적용에 대하여 규제하는 사례는 거의 없다. 연금계리관점에서 장래에 걸쳐서 재정균형을 유지할수 있는 적립방식은 모두 인정되고 있으며, 제도 내용 및 가입자의 특성을 고려하여 연금계리사가 사용자와 협의하여 자율적으로 결정하고 있다. 특히 계리사회 등에서 계리기준(actuarial standard)을 정하고 실무지침으로 활용하고 있으나, 특정방식으로 제한하지 않고 원칙만을 제시하고 있을 뿐이다. 미국의 경우 연금계리사의 자율성을 인정하여 자율적으로 선택하도록 되어 있다. 이에 반해 일본은 법규정에 의해 획일적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보험계리사가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범위는 매우 협소하다. 그 이유는 개별제도의 각각에 적합한 적립방식을 채택하는 관점보다는 계리적 계산의 안전성을 보다 중시하기 때문이다.

## 나. 연금재정 검증

### (1) 미국<sup>15)</sup>

매년 부담금을 재계산하며 부담금계산 과정에서 재정검증을 통해 최저부담금과 최대부담금을 산정하게 된다. 재계산, 재정검증이 별도로 구분되지 않고 최저부담금을 결정하는 과정이 곧 재정검증이 된다. 납입부담금은 최저부담금과 최대부담금 내에서 결정된다. 부담금 재계산작업이 이루어지는 기간 동안은 전년도 현재부채에 의해 납입시기 및 납입수준을 정하게 된다. 재계산이 완료되면 확정된 기준에 의한 부담금 정산이 이루어지며, 늦어도 다음해 8.5개월 이전에 최저기준 및 최고기준의 범위 내에서 부담금의 납입이 완료되어야 한다.

15)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ERISA Act Section 302, Regulations, Revenue Ruling, Notices, Procedures, Announcement, and Schedule B, SB, and MB(Form 5500) 및 Actuarial Standard of Practice(ASP), No.4, No.27 등을 참조.



(가) 최저부담금 산출

계속기준과 비계속기준을 적용하여 최저부담금 수준을 산출하게 되는데, 계속기준상 최저부담금은 부채를 증가 또는 감소시키는 요인의 상각기간을 각각 최대로 적용하여 산출하게 되며, 비계속기준상 최저부담금은 발생부채(CL: Current Liability)와 적립자산의 비율에 따라 산출(추가적립비용)하게 된다.

$$\begin{aligned}
 \text{최저부담금} &= \text{계속기준} + \text{비계속기준} - \text{선납부담금} \\
 &= \text{계속기준} [ \text{표준기여금(NC)} + \text{과거근무채무 상각 부담금 (30년)} \\
 &\quad \pm \text{제도변경으로 인한 채무증가 및 감소액(30년)} \\
 &\quad \pm \text{기초율변경으로 인한 채무증가 및 감소액(10년)} \\
 &\quad \pm \text{보험수리적 손익(5년)} \pm \text{기타} ] \\
 &\quad + \text{비계속기준(추가적립비용<sup>16)</sup>)} - \text{선납부담금<sup>17)</sup>
 \end{aligned}$$

(나) 최대부담금 산출

계속기준과 비계속기준을 각각 적용하여 산출한 부담금 중 큰 금액을 최대부담금으로 산출하게 된다. 계속기준상 최대부담금은 부채를 증가 또는 감소시키는 요인의 상각기간을 10년으로 적용하여 산출하게 된다. 즉

$$\begin{aligned}
 \text{최대부담금} &= \text{기여금} + \text{과거근무채무 상각부담금(10년상각)} \\
 &\quad \pm \text{제도변경으로 인한 채무증가 및 감소액(10년)} \\
 &\quad \pm \text{기초율 변경으로 인한 채무증가 및 감소액(10년)} \\
 &\quad \pm \text{보험수리적 손익(10년)} \pm \text{기타}
 \end{aligned}$$

다만, 계속기준상 최소부담금과 비교하여 더 큰 금액을 최대부담금으로 한다.

16) 추가적립비용(additional funding charge)의 경우 현재이자율로 계산한 CL과 연금자산을 비교하여 적립율이 90% 미만이면 적립부족액을 4~6년에 걸쳐 추가비용으로 부담한다.

17) 직전년도에 적립수준 이상으로 납부한 부담금이 있으면 차감한다.

이에 반해 비계속기준상 최대부담금은 미적립채무(CL - 적립자산)로 설정하게 되어 있다.

$$\text{최종 최대부담금} = \text{Max}(\text{계속기준상 최대부담금}, \text{비계속기준상 최대부담금})$$

최저부담금과 최대부담금을 결정하는 경우 「Min (NC+AL<sup>18)</sup>-자산(Asset), 자산(Asset) - 170%<sup>19)</sup>CL)」와 같은 산식에 의해 결정되는 적립최고한도(Full Funding Limit)가 중요한 기준이 된다. 즉 최저부담금이나 최대부담금은 적립최고한도를 초과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 (2) 일본<sup>20)</sup>

### (가) 계속기준 재정검증

계속기준에서는 사업년도말의 향후 급부의 현재가치(급부현재)에서, 규약에서 정한 보험료(율)에 의해 향후 보험료수입의 현재가치(보험료수입현재)를 공제한 금액을 산정하는데, 이 금액이 책임준비금이다.<sup>21)</sup> 따라서 연도말 적립금이 책임준비금을 상회하는지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적립부족액(책임준비금-적립금)이 허용 이월부족금을 초과할때 부담금을 재계산하도록 하고 있다. 부담금의 재계산은 특별보험료를 증액하는 방법으로 처리하고 있다. 허용 이월부족금을 적용하는 3가지 방법은 정기적인 재정재계산으로 보험료 인상이 가능한 범위로서 장래 20년 표준보험료수입현재의 15% 이하의 일정비율로 하는 방법, 시가에 의한 적립금액의 변동을 감안하여 책임준비금의 15% 이하의 일정비율로 하는 방법, 이들 두 개의 방법 중 낮은 금액으로 하는 방법 등 3가지의 방법 중에서 각 확정급여형 퇴직연금 규약에서 정하는 것으로 하고 있다.

18) Accrued Liability(AL)은 제도가 계속될 것이라는 가정 하에 산출되는 부채로 예측급부채무(PBO: Projected benefit obligation)개념으로 사용되기도 한다.

19) CL에 곱해지는 계수는 매년 변동하며, 이에 대한 것은 정책당국에서 정한다.

20) 노동후생성, 확정급부기업연금법, 시행령, 시행규칙, 2002.3.

21) 확정급부기업연금법 제60조 제2항, 규칙 제53조 제1항

(나) 비계속기준 재정검증

매사업연도말 적립금이 최저적립기준액을 상회하는지를 검증하게 되는데, 최저적립기준액에 상당하는 적립금이 적립되어 있으면 최저보전급부에 관계된 가입자 및 수급자의 수급권은 기본적으로 보호된다고 할 수 있다. 최저적립기준액은 가입자 등의 당해 사업연도말까지의 기간에 관계되는 급부(최저보전급부)의 현가평가액이다. 여기에서 당해 사업연도말일까지의 가입자기간에 관한 분(최저보전급부: 규약에 근거하여 채정된 연금급부)의 산출방법은 <표 3>과 같은데 가입자는 가입기간 대응방식 및 필요지급기준 방식 중에 선택하도록 되어 있다.

<표 3> 최저보전급부 산출방법의 특징 비교

방 식		내 용	산 식
가입기간 대응방식	개념	- 표준퇴직연령에서의 예상급부액에서, 현시점까지의 가입기간에 상당하는 분을 안분율을 곱하여 산출하는 방법	$\text{현재급여} \times \text{표준자격상실연령지급률}$ $\times \frac{\text{현시점가입기간}}{\text{표준자격상실연령가입기간}}$
	산식	- 표준자격상실연령에 도달하여 가입자격을 상실한 경우에 지급되는 급부액 $\times$ (사업연도말일까지 가입기간 $\div$ 전가입기간) * 급부액은 해당 사업연도말 기준적용	
지급액 기준방식	개념	- 현시점에서 퇴직했다고 가정된 경우의 급부액에 연령에 따라 정해진 비율을 곱하여 산출하는 방법	$\text{현재급여} \times \text{표준자격상실연령지급률}$ $\times \frac{\text{현시점지급률}}{\text{표준자격상실연령가입기간}}$ $= \text{현재급여} \times \text{현시점지급률}$
	산식	- 당해사업연도말일에 가입자격을 상실한 경우에 지급되는 급부금 $\times$ 연령별비율	

(3) 영국

영국의 경우 2004년 연금법 제정에 따라 최소적립요건(MFR: Minimum Funding Requirement)방식에서 맞춤형 적립(SSF: Scheme Specific Funding) 방식으로 전환하였다. 2004년 연금법에 의해 새로 설립된 연금감독청(The

Pension Regulator)의 최대 관심사도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의 적립을 어떻게 규제할 것인가에 대한 것이다. 1997년 4월부터 적용된 최소적립요건(MFR)은 최소한 최저적립수준을 충족시킬 수 있는 자산을 보유하도록 규정하는 표준화된 접근 방식이었다. 이는 개별연금제도의 특수성을 반영하지 못한 것으로 제도운영자들이 장기적 관점에서 재무건전성을 유지하려는 노력보다는 단기적 시장상황에 초점을 맞추는 등의 부작용이 발생하였다. 이에 따라 영국 정부는 MFR를 폐기하고 적립 수준을 충족시킬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기업별 퇴직연금제도의 독특한 상황을 고려하여 융통성 있게 적용되는 SSF 방식을 채택하였다.<sup>22)</sup>

(4) 캐나다<sup>23)</sup>

캐나다는 재계산, 재정검증이 별도로 구분되지 않고 최저부담금을 계산하는 과정이 곧 재정검증이 된다. 최저한도, 최고한도 계산시 계속기준과 비계속기준을 고려하여 산출하도록 Pension Benefit Regulation에 규정되어 있다(〈표 4〉참조).

계속기준평가와 비계속기준 평가를 실시하여, 적립부족이 발생하는 경우, 일정기간 동안 상각해 가는 특별보험료(SPGC)를 산출하게 된다. 계속기준에 의한 경우 일정기간(15년)동안 분할하여 적립부족에 충당하는 특별보험료를 산출하며 비계속기준 평가에 의한 경우에는 이보다 짧은 기간(5년)에 대해 특별보험료( $SP^{solve}$ )를 산출한다. 특히 계속기준에 의한 재정검증결과, 적립초과가 발생하는 경우 잉여금은 향후 표준보험료와 상계하도록 하고 있다. 최저부담금 및 최대부담금(최대보험료) 한도의 산정은 다음과 같이 되어 있다. 즉 최저부담금(Minimum Contribution)한도는 「 $NC + (PSL^{set-up} + PSL)$ 의 상각액 +  $(SP^{GC} + SP^{solve}) - 잉여금$ 」에 의해 산정하며, 최대보험료(Maximum Contribution)한도는 「 $NC + (PSL^{set-up} + PSL) + \text{Max}(UL^{GC}, (SD + \text{연금자산조정액})) - \text{초과잉여금}$ 」<sup>24)</sup>에 의해 산정한다.

22) 이봉주, 『퇴직연금 지급보증제도의 효율체계에 관한 연구』, 보험개발원 보험연구소, 2007. 3, pp. 95~98.

23)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A.W.Anderson, "Pension Mathematics for Actuaries", 3rd Edition 2006 및 금융감독원,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의 재정건전성 제고방안, 2005.4 등을 참조

〈표 4〉 캐나다의 계속기준과 비계속기준에 의한 재정검증 비교

	계속기준평가	비계속기준 평가
자 산	시가평가 또는 일정기간동안 시가평가를 평균화	시가평가액 - 청산기준 + 연금자산조정액 (연금자산조정액 : 특별보험료의 5년 현가액)
채 무	제도의 계속유지관점에서 장기예측에 의한 기초율(NC산출기준과 동일)을 적용하여 산출	제도청산관점에서 산출
적 립 부 족 발생시	일정기간 (15년)동안 분할하여 적립부족에 충당하는 특별보험료산출( $SP^{GC}$ )	일정기간(5년)동안 분할하여 적립부족에 충당하는 특별보험료 산출 ( $SP^{Sole}$ )
적립초과 발생시	잉여금이 초과잉여금 한도를 넘어서는 경우 초과잉여금은 향후 NC 와 상계	-

주: 초과잉여금한도 =  $\min[(\text{채무의 } 20\%), (\text{채무의 } 10\% \text{와 } NC \times 2 \text{ 중 큰 값})]$

### 다. 적립금 및 최저 책임준비금 평가

거의 모든 국가에서는 적립금(연금자산)에 대해 시가평가를 적용하고 있다. 즉, 시장에서 거래되는 시장가치에 의해 평가하되, 시장가치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공정가치 평가를 적용하게 된다. 또한 연금자산가치의 급격한 변동에 따른 손익변동성을 완화하기 위해 일정 기간에 걸쳐 가치 변동 폭을 점진적으로 인식하는 평준화(smoothing)방식을 사용하고 있는데, 미국과 일본의 경우가 평준화 기법을 사용하여 적립금(연금자산)을 평가하는 대표적인 국가에 해당된다. 이에 반해 최저책임준비금(최소적립기준하의 연금부채)의 평가는 적립금(연금자산)의 평가에 비해 평가방식의 다양성 및 계산기초율(평가기초율)의 선정 등으로 인해 한층 복잡한 측면을 갖고 있다. 즉 부채 평가는 부담금 산출시 사용된 적립방식과 동일하게 적립할 수도 있으나, 최저적립기준과 같이 재정건전성 감독을 위한 사후조치가 존재할 경

24) 여기에서  $UL^{GC}$ 는 계속기준하의 미적립채무, SD는 적립부족액을 의미한다.

우 또는 퇴직연금 간 비교를 위해서는 별도의 적립방식(연금부채평가방식)을 지정하고, 별도의 계산기초율 사용도 가능하다<sup>25)</sup>(〈표 5〉참조).

〈표 5〉 최저 책임준비금 평가 기초율

국 가	미 국	일 본	영 국
평가 기초율	최저부담금리할인율은 회사채수익률(AA-)	- 예정수익률: 최근 5년간의 20년 국채평균수익률을 감안, 후생노동대신이 정한 비율 - 사망률 : 기준사망률×0.95 (남자)또는 0.925(여자)	- 사망률: 표준사망률보다 낮게 설정 - 할인율: 국채수익률

〈표 5〉에서 보는 바와 같이 영국의 최저책임준비금(연금부채) 평가 할인율은 국채수익률을 사용하며 사망률은 표준사망률 보다 낮게 책정하고 있다. 이에 반해, 일본은 최근 5년간의 20년 국채의 평균수익률을 감안하여 후생노동대신이 정하는 비율로 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사망률은 기준사망률×0.95(남자) 또는 0.925(여자)로 하도록 규정되어 있다<sup>26)</sup>. 특히 선임계리사의 자율성이 매우 높은 캐나다의 경우에는 연금계리사가 정하는 기초율을 사용하고 있다는 점이 특징적이다.

### 라. 적립수준 및 PSL 상각

미국 및 일본 등 대부분의 국가는 우리나라와 달리 책임준비금의 적립수준, 즉 추정된 연금부채의 100%를 적립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처럼 대부분의 국가에서 완전적립을 요구하고 있다. 또한 책임준비금의 적립수준 뿐만 아니라 연금부채에 대비한 연금자산의 비율, 즉 적립비율(= 연금자산/연금부채) 역시 최저 100%를 기준으로 하거나 영국, 네덜란드 등과 같이 100% 이상(영국 : 104%, 네덜란드 :

25) 최저적립기준 적용을 위한 할인율 및 사망률은 감독당국에서 별도로 지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26) 이흥무, 「퇴직연금수급권보호의 취약성과 낮은 적립수준에 대한 선진국의 사례(下)」, 『손해보험』, 손해보험협회, 2005.10, p.17.

105%<sup>27)</sup>)을 최저 수준으로 설정하고 있다. 또한 선진국에서는 통상 과거근무채무의 발생요인을 분석하여 사안에 따라 상각기간을 달리 적용하고 있다.

〈표 6〉 적립수준 및 과거근무채무 상각

국 가	미 국	일 본	영 국
준비금적립수준	100%	100%	100%
최저적립비율	90%에서 100%로 상향조정 <sup>1)</sup>	100%	104%
PSL상각	- 상각기간 차별화(3년 ~ 30년) - 과거근무채무상각 30년 - 재정방식의 변경 10년 - 제도개정 30년	- 최소 7년, 최장 20년 이내 상각 - 균등, 탄력, 정율상각 인정	- 20년 이내 상각

주 : 1) 2006년 연금보장법(Pension Protection Act) 개정으로 최저적립수준을 100%로 상향 조정

미국의 경우는 30년에 걸쳐서 상각하고 있는 반면, 영국은 20년 이내에서, 캐나다 15년에 걸쳐서 상각하고 있으며 일본은 7년~20년에 걸쳐서 상각하고 있다. 특히 일본의 경우 원리금균등상각<sup>28)</sup>, 탄력상각<sup>29)</sup>, 정율상각<sup>30)</sup>을 인정하여 상각방법의 다양화를 도모하고 있다. 연금재정의 건전성 측면에서 볼 때 미국은 기업의 부담을 고려하여 장기간에 걸쳐 상각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는 반면, 일본은 수급권보

27) 네덜란드에서는 2006년 연금개혁을 통해 적립비율이 105%(최저적립비율)미만인 경우 1년 이내 재무건전성 관련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를 담은 자구계획서(recovery plan)을 작성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시장상황에 따라 Solvency Buffer 25%를 고려하여 적립비율이 130% 이상을 유지하도록 규정(연기금에 대한 평균적인 요구적립수준)하고 있다.

28) 원리금균등상각은 과거근무채무액을 3년 이상 20년 이내의 범위내에 미리 규약에서 정한 기간(예정상각기간)으로 균등하게 상각하는 방법이다.

29) 탄력상각은 매사업년도의 특별부금액을 하한 특별부금액 이상, 이하의 범위내에서 규약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예정상각기간이 5년미만인 경우 최단상각기간은 3년이며, 예정상각기간이 15년 이상인 경우는 최단 상각기간이 10년이 된다.

30) 정율상각은 과거근무채무액에 일정 비율(15/100 이상 50/100 이하의 범위 내에서 정함)을 곱해 상각하는 방법이다.

호차원에서 단기간에 상각이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연금재정의 건전성을 유도하고 있다는 점이 특징적이다.

### 마. 적립과부족 시 시정조치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의 재무건전성을 실질적으로 확보하기 위해서는 적립과부족에 대한 감독당국의 적기시정조치가 뒤따라야 한다. 적립부족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추가부담금의 납입, 부족액의 상각, 부금 이외의 각출을 통한 적립부족 보충<sup>31)</sup> 등이 가능할 것이며, 적립초과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최대적립한도 설정, 부담금 일시 중단(contribution holidays), 연금지급기준 향상, 사용자 자산으로의 환원 등이 가능할 것이다. 그러나, 적립초과액을 사용자 자산으로 환원할 수 있을 경우 사용자는 퇴직연금제도의 세제혜택을 이용하여 조세회피를 도모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벌과금을 부과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적립부족 시 주요 국가의 시정조치는 다음과 같다. 미국의 경우 적립률이 90% 이하인 경우 추가부담금을 납입해야 하며, 캐나다의 경우 적립부족액을 5년 이내에 해소하도록 하고 있다<sup>32)</sup>. 일본의 경우에도 적립률이 90% 이하인 경우 적립부족액을 7년 이내에 해소해야 하며, 적립부족 상태가 심각할 경우에는 연금급여를 감액시킬 수도 있으며, 추가 하락시에는 최저적립기준을 일시적으로 완화시켜 주고 있다.

영국의 경우 연금자산이 연금부채의 90%를 하회하는 경우에는 3년 이내에 그 기준을 달성하여야 하며, 100%까지 적립수준의 인상은 10년 이내로 한정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3년마다 한번씩 의무적으로 연금수리평가를 받아야 하며, 적립수준이 100%를 하회하는 것으로 나타나면 연금기금을 운용하는 이사회는 신규 연금각출 계획서를 작성, 임명연금계리사의 증명을 첨부하여 제출할 의무가 있다.

31) 구체적으로는 기업이 보유하는 주식 등의 유가증권을 충당하는 방법으로, 이 방법에는 연금제도에 주식 등을 직접 납부하는 방식과 퇴직급부신탁 등의 형태로 연금자산과 분리해서 관리하면서 필요에 따라 퇴직금의 지급과 연금부금에 충당하는 방법이 있다.

32) 계산기초율의 불리한 변동 또는 연금급여 개선에 따른 미적립채무에 대해서는 15년 이내에 해소하도록 하고 있다.



〈표 7〉 적립과부족에 대한 시정조치

국 가	미 국	일 본	영 국
적 립 부족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추가부담금납입(1차)</li> <li>· 적립률 90%이하</li> <li>- 부족액 상각(2차)</li> <li>· 급부개선에 따른 부족(30년상각)</li> <li>- 급부액감액 등 (3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순자산액이 최저적립기준액의 1.05배에 미치지 못할때 7년내 회복조치</li> <li>- 연기금 부족시 연금급부액 감액</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일정 기간내 추가부담금 납입</li> <li>· 3년내: 최저책임준비금의 90%</li> <li>· 10년내: 최저책임준비금의 100%</li> <li>- 정상화계획 마련</li> </ul>
적 립 초과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부채초과분환수, 각출 휴일 등 인정</li> <li>· 적립최고한도 설정</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용자 부담금 납입감소 또는 중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세법에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적립최고한도 설정</li> <li>· 사용자 부담금 납입감소 및 사용자환수 가능</li> </ul>

영국의 연금기금에 대한 재무건전성 검증프로세스는 3년마다 정기적인 연금수리 평가, 연금기금으로부터 지명된 임명연금계리사와 수탁자에 의해 간행되는 연차보고서, 적립수준이 최저적립 수준의 100%를 하회하는 경우의 중장기적인 회복조치 및 적립수준이 최저적립기준의 90%를 하회하는 경우의 긴급한 회복조치 등과 같이 3단계로 구성되고 있다. 특히 긴급한 회복조치에서는 즉시적인 현금보전이외에 은행에 의한 채무보증, 용도가 특정된 은행예금 내지 예비자산(cash reserve)보유 등의 방법도 인정되고 있다. 또한 재정재계산 결과 적립액이 부족하다고 판정될 경우 정상화계획(recovery plan)을 마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정상화계획은 사용자의 향후 사업계획, 제도가입자의 특성, 연금보장기구(PPF: Pension Protection Fund)의 보험요율 등을 감안하여 작성해야 하는데, 여기에는 적립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추가 각출금액과 기간을 명시하도록 하며 중요 가정도 포함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계리적 가치평가와 관련된 내용, 즉 자산가치, 이연 수급자와 각출 가입자로 분리된 책임준비금, 외부 생보사를 통해 연금보험 가입시 소요되는 비용 추정액, 책임준비금 추정시 사용된 방법, 투자수익률, 임금상승률, 현재 사망률 및 20년 후 사망률 등 책임준비금 추정시 사용한 주요 가정 등이 포함된다.

적립초과 시 주요 국가의 시정조치를 살펴보면 정규부담금과 상계하는 것이 일반

적이다. 미국의 경우 적립최고한도(full funding limit) 내에서 최저부담금과 최대 부담금을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 일본은 적립상한액<sup>33)</sup>을 초과하는 경우 정규부담금에서 공제하도록 하고 있다. 캐나다의 계속기준에 의해 평가할 경우에는 잉여금이 일정 한도<sup>34)</sup>를 초과할 때에는 잉여금을 장래 정규부담금과 상계하도록 하고 있다. 이처럼 선진국은 적립과부족에 따른 적기시정조치가 적립비율 수준 등에 따라 체계화되어 있으나, 우리나라의 경우 근퇴법 및 시행령, 시행규칙, 퇴직연금감독규정 등에 관련된 규정이 전무하여 실질적인 근로자수급권보호를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 바. 연금재정 재계산

자산 평가 및 부채 평가를 기초로 지급능력을 평가하게 되는데 평가 주기는 1~5년으로 다양하다. 즉, 미국과 영국은 3년에 1번, 일본은 최소한 5년마다 1번, 재정재계산을 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영국의 경우 재정재계산 주기가 3년인 경우에는 중간에 연금계리보고서(actuarial report)를 작성하도록 요구하고 있다(<표 8>참조).

〈표 8〉 부담금의 재정재계산 주기 비교

국 가	미 국	일 본	영 국
주기	1년	최소 5년	3년
기타	-	-	중간에 연금계리보고서작성

이는 가장 최근 재정재계산 실시 이후에 발생한 제반 요인들이 연금부채에 미친 영향을 분석한 것으로 연금계리사가 작성하게 된다. 그 주요 목적은 퇴직연금의 재정상태에 대한 중대한 변동을 반영하여 갱신(update)을 실시하는 데 있다. 특히 캐나다의 경우 3년마다 재계산하지만, 적립률이 80% 미만이거나 90% 미만이면서 부족액이 5백만 달러 이상인 경우에는 매년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33)  $1.5 \times \max(\text{계리적 부채}, \text{최저적립기준액})$

34)  $\min(\text{계리적부채} \times 20\%, \max(\text{AL} \times 10\%, \text{정규부담금} \times 2))$

## 2. 재무건전성 규제 특징

지금까지 미국, 일본, 영국 등 주요국의 재무건전성 규제제도를 살펴 본 결과를 토대로 재무건전성 규제의 특징을 요약·정리하면 <표 9>와 같다. <표 9>에서 보는 바와 같이 사전적 재무건전성 규제라 할 수 있는 책임준비금 평가방식(연금부채평가방식)의 경우, 일본의 경우는 미국 및 영국과 달리 계리적 안정성을 중시하여 수리적으로 타당한 방식을 인정하고 있다. 즉 적립방식의 선택에 최소한도의 제약요인이 존재하고 있다.

<표 9> 재무건전성 규제의 특징 비교

국 가	미 국	일 본	영 국
책임준비금 평가방식	- 계리사 자율성 인정	- 계리적 안정성 중시	- 계리사 자율성 인정
연금재정의 검증	- 계속/비계속기준을 통합 운용 <sup>1)</sup> (최저/최대적립한도)	- 계속/비계속기준 (최저/최대적립한도)	- 계속/비계속기준 · 맞춤형 적립방식 적용
적립금 및 최저책임 준비금 평가	- 자산/부채 시가평가 - 별도로 부채평가 기초율 적용	- 자산/부채시가평가 - 별도 부채평가 기초율 적용(경험치 사용)	- 자산/부채시가평가 - 보수적인 부채평가 기초율 적용
적립수준 및 과거근무 채무상각	- 연금부채 100% 적립 - 최저적립비율 100% - PSL상각: 30년내 상각	- 연금부채 100%적립 - 최저적립비율 100% - PSL상각: 7-20년	- 연금부채 100%적립 - 최저적립비율 104% - PSL상각: 20년내 상각
적립 과부족시 시정조치	- 적립률 90% 이하시 추가부담 - 산업별 특성 고려 - 상각기간 상이	- 적립률 90% 이하시 적립부족액 7년내 해소	- 일정기간내 추가부담금 납입 · 3년내는 최저책임준비금의 90%, 10년내는 최저책임 준비금의 100% 적립
	적립초과시 사용자에의 환수, 각출휴일 등 시정조치 존재		
연금재정 재계산	1년	최소 5년	3년 (중간에 연금계리보고서 작성)

주: 미국의 경우는 재계산과 재정검증이 부담금산출과 별도로 구분되지 않고 납입부담금은 사용자가 법정최저부담금과 최대세금공제부담금 범위 내에서 선택한다.

연금재정의 검증체계를 보면 다소 차이는 존재하지만 거의 모든 국가가 계속기준 및 비계속기준에 의한 재정검증을 실시하고 있으며, 적립한도도 최저적립한도 및 최대적립한도를 두고 있다. 일반적으로 최저적립한도는 현재급여방식을, 최대적립한도는 예측급여방식을 적용하고 있다는 점이 특징적이다. 최근 영국은 기업별 퇴직연금제도의 독특한 상황을 고려, 최저적립한도에서 맞춤형 적립한도로 전환되었다. 적립금 및 최저책임준비금 평가를 보면 모든 국가가 자산과 부채를 시가평가하고 있으며, 부채시가평가지 적용되는 계산기초율은 부담금 산출 계산 기초율과 다른 별도의 계산기초율을 적용하고 있다. 적립수준의 경우, 대부분의 국가가 연금부채의 100%이상을 적립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대부분의 국가가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적립부족 및 적립초과시 적기시정조치를 두고 있으며, 특히 적립부족시에는 대체로 적립비율 정도를 고려한 적립부족액 상각기간을 달리하고 있다. 또한 자산평가 및 부채평가를 기초로 연금재정 재계산(부담금 재계산)을 1~5년 주기로 실시하여 부담금을 재산정하고 있으며, 영국은 특히 중간에 연금계리보고서를 작성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 Ⅳ. 퇴직연금 재무건전성규제 현황 및 문제점

### 1. 재무건전성 규제 현황

#### 가. 책임준비금 평가

우리나라 근퇴법 등 관련법규에서는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의 적정한 책임준비금을 산정하기 위해 장래법에 의한 책임준비금 평가방식과 과거법에 의한 책임준비금 평가방식을 활용하도록 하고 있다. 즉 계속기준과 비계속기준에 입각하여 책임준비금을 산정하고 이를 통해 적정한 책임준비금을 적립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특히 장래법에 의한 책임준비금 평가에서는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의 속성상 사망률, 퇴직률, 임금상승률, 기금운용수익률 등 다양한 가정이 요구된다.

우리나라 “확정급여형 퇴직연금 운용관리 계약서” 별지에 속하는 연금계리기준서에서는 부담금 산출이율을 “기준이율<sup>35)</sup> ±1%”로 정하고 있으며, 예정퇴직률의 경우 부담금 산출시 300명 이상 사업 또는 경험퇴직률 산출·적용이 가능한 단체에 대해서는 당해 사업의 직전 3년 이상의 경험통계를 기초로 산출된 계약단체별 경험퇴직률을 사용하도록 하고 있다<sup>36)</sup>. 또한 300명 이상 사업 또는 경험임금인상률 산출·적용이 가능한 단체에 대해서는 경험통계를 기초로 산출된 계약단체별 경험승급률 및 경험임금상승률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에는 표준승급률과 임금상승률<sup>37)</sup>을 사용하도록 하고 있다<sup>38)</sup>.

또한 우리나라는 “확정급여형 퇴직연금 운용관리 계약서” 별지에 속하는 연금계리기준서에서 연금규약에 정해진 급여를 지급하기 위한 재원조달 방식으로서 예측급여방식 또는 특정연령방식(assumed entry age normal method)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sup>39)</sup>. 이처럼 책임준비금의 평가(부담금평가방식)로 예측급여방식과 특정연령방식 등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어떠한 산출절차 및 기준에 따라 부담금을 계산하고 산출하여야 하는지, 연금세제상의 인정범위 등은 어떠한지 등에 대한 규정 자체가 없어 선언적 의미의 책임준비금 평가가 되고 있다.

- 
- 35) 기준이율은 직전 사업연도말 기준으로 증권협회가 발표하는 10년 만기 국고채의 36개월 평균수익률과 3년 만기 회사채의 36개월 평균 수익률의 합을 2로 나눈 값을 의미한다.
  - 36) 다만 300인 미만 사업 또는 경험퇴직률 산출·적용이 불가능한 단체에 대해서는 보험업법에 의한 보험요율산출기관이 산출한 퇴직률을 사용하도록 하고 있다.
  - 37) 현재 우리나라의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에서는 가입시점부터 퇴직시점까지 연금적립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퇴직이후 연금지급은 포함하지 않기 때문에 물가상승률은 관련되지 않는 변수이다.
  - 38) 이와 같은 현행 계산기초율 사항은 노동부 규약심사를 위해 노동부 내부 문건으로 제시한 기준일 뿐, 부담금을 어떠한 절차 및 기준에 의해 적용·산출하여야 한다는 정형화된 기준은 아니다.
  - 39) 동양생명(주),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운용관리계약서의 별지 2(연금계리기준서), 2005.12., p.12.

## 나. 연금재정 검증

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에서는 재무건전성 확보에 관한 원칙적인 기준을 설정하고 구체적인 산정방법과 적용수준은 법령 및 시행규칙에서 정의하고 있다. 관련법규에서 정의하고 있는 재정검증 방안은 두 가지로 구분되는데, 첫 번째는 장기적인 균형의 개념을 중요시하고 퇴직연금제도를 영속적 관계로 고려하는 것으로 계속기준에 의한 책임준비금과 적립금을 비교하는 재정검증이다. 두 번째는 청산의 관점에서 보는 것으로 과거근무기간에 상응하는 부채를 책임준비금으로 하여 적립금과 비교하는 비계속기준 또는 청산기준에 의한 재정검증이다. 즉 우리나라 관련법규에서는 계속기준 및 비계속기준에 의한 방법을 모두 산정하되, 두 금액중 더 큰 금액이 적립되도록 규약에 명시하도록 정의하고 있다.

계속기준에 의한 재정검증(적립부족에 따른 부금의 재계산)에서는 매 사업년도말 적립금이 계속기준에 의한 책임준비금의 일정수준인지를 검증하게 되는데, 이 경우 적립금 평가는 시가평가 또는 일정기간의 시가평가액을 평준화(smoothing)하는 방법 중에서 선택하도록 하고 있다. 책임준비금은 급여현가에서 장래부담금수입현가와 과거부담금수입현가의 합을 공제하여 산정하도록 되어 있다. 이와 달리 비계속기준 재정검증(적립부족에 따른 부금의 각출)에서는 매 사업년도말 적립금이 비계속기준에 의한 책임준비금(=퇴직급여추계액)의 일정수준을 상회하고 있는지를 검증하게 되는데 비계속기준 재정검증에서도 적립금 평가는 시가평가 또는 일정기간의 시가평가액을 평준화(smoothing)하는 방법 중에서 선택하도록 하고 있다. 이 경우 책임준비금(=퇴직급여추계액)은 퇴직금지급을 위한 평균임금합계×근속연수와 같은 산식에 의해 산출하도록 되어 있다.

## 다. 적립수준 및 PSL 상각<sup>40)</sup>

우리나라 퇴직연금제도에서는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의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

40) 여기에서의 PSL상각은 60/100에 이르기 위한 상각이라는 점에서 선진국처럼 적립과부족 검증을 통한 적립비율에 따른 PSL상각과는 근본적으로 다르며, 또한 현재 모범기준에서 5-20년까지 상각기간을 두고 있지만 이 역시 법률의 규정에 의한 상각방법이 아니라서 점에서 문제가 존재한다.

해 현행 퇴직금을 기초로 한 최저책임준비금 규제 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즉 재정방식에 따른 장래법 책임준비금<sup>41)</sup>과 퇴직금제도에 따라 과거근무기간에 상응한 과거법 책임준비금 중 더 큰 금액의 60% 이상을 적립하도록 규정하고 있다<sup>42)</sup>. 따라서 추정된 책임준비금(부채금액)도 전액 적립하는 것이 아니라 근퇴법 시행령 제12에서 정하는 수준이 60/100 이상을 적립하도록 하고 있다.

$$\text{최저책임준비금} = \text{Max}(\text{계속기준에 의한 책임준비금}, \text{비계속기준에 의한 책임준비금}) \times 60\% \text{ 이상}$$

문제는 과거근무기간을 가입기간으로 설정하는 경우의 적립금 수준은 100분의 60 이하의 범위 내에서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으로 하여 더 완화된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는 점이다(근퇴법 시행령 제4조 단서조항). 이에 따르면 과거근무채무에 대한 상각기간은 과거근무기간에 따라서 차이가 존재한다. 즉, 과거근무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1차년도에, 1년 이상 3년 미만인 경우는 2차 년도에, 3년 이상 6년 미만인 경우에는 3차년도에, 5년 이상 10년 미만인 경우는 4차년도에, 10년 이상인 경우는 5차년도에 계속기준 및 비계속기준별로 산정된 책임준비금액의 100분의 60이 되도록 과거근무채무를 상각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가입기간 전체(과거근무기간과 퇴직연금 설정시점 이후의 가입기간을 합산)에 대한 적립금 수준은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산정될 수 있다<sup>43)</sup>.

$$\frac{[(\text{과거근무기간} \times \text{적립금수준}) + (\text{퇴직연금설정시점이후의 가입기간} \times 60/100)] \times \text{급여수준}^{44)}}{\text{가입기간 전체} \times \text{급여수준}}$$

41) 장래 지급될 퇴직연금 급여의 현가에서 장래에 수입될 부담금의 현가를 공제한 금액을 말한다.

42) 평균임금의 30일분 상당액에 과거 근속연수를 곱한 금액을 말한다.

43) 과거근무기간에 대한 적립금 수준이 100분의 60인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의 적립금 수준은 가입기간 전체에 대하여 100분의 60을 유지하여야 한다.

이처럼 부담금 산출 기준을 100분의 60으로 정한 것은 사용자의 부담능력을 근로자 수급권 보호보다 우선적으로 고려한 데 기인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와 같이 현행 기준 하에서는 퇴직연금에 대한 기업의 적립의무를 60%로 규정하고 있어, 기업은 연금지급에 필요한 재원을 100% 적립하지 않아도 되도록 되어 있다. 이에 따라 기업이 도산한 경우, 기업이 그 동안 적립의무를 성실히 이행했다 하더라도 퇴직연금 적립금에는 60%의 재원밖에 없으므로 가입자와 수급자는 퇴직연금을 60%밖에 수령할 수 없는 문제점이 존재하고 있다.

### 라. 적립과부족시 시정조치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의 재무건전성을 실질적으로 확보하기 위해서는 적립과부족에 대한 감독당국의 적기시정조치가 뒤따라야 한다. 적립부족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특별부담금을 부과하거나 적립부족을 해소하기 위한 계획 수립 등이 가능할 것이며, 적립초과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부담금 일시중단(contribution holiday), 연금지급기준 향상, 사용자 자산으로의 환원 등이 가능할 것이다.

즉 적립금 및 책임준비금의 평가를 기초로 적립과부족을 판단하고 그 원인을 분석한 다음 재정건전성 유지를 위해 적립과부족에 대한 적절한 대응조치, 즉 적기시정조치를 취할 필요성이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현재 적립과부족에 대한 구체적인 적기시정조치 등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표 10〉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적립부족 및 적립초과 산정기준은 마련되어 있지만 적립과부족 수준에 따른 적절한 시정조치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이에 대한 규정보완작업이 요구되고 있다.

44) 급여수준이라 함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1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급여수준을 말한다.



〈표 10〉 적립과부족 산정과 적기시정조치

	적립부족	초과적립
적립 과부족 산정	평가적립금 < Max (계속기준에 의한 책임준비금×60%, 비계속기준에 의한 책임준비금×60%)	평가적립금 > Max (계속기준에 의한 책임준비금, 비계속기준에 의한 책임준비금)×일정비율
적기 시정조치	- 추가부담 등 별도 적기 시정조치 사항 부재	- 최대적립한도 규정 부재 - 각출휴일, 사용자 자산으로의 환원, 차사업년도 납입부담금에서 공제 등 관련 규정 부재

즉 평가적립금이 최저책임준비금에 미달함으로써 나타나는 차이(평가적립금 - 최저책임준비금)인 적립부족액을 사용자가 추가부담할 것인지, 아니면 일정기간 동안 적립부족액을 상각할 것인지, 연금급부를 감액할 것인지 등에 대한 규정 자체가 없을 뿐만 아니라, 적립초과시에도 부담금 일시중단, 사용자 자산으로의 환원, 차사업연도 납입부담금 공제 등 관련 규정 자체가 존재하지 않다<sup>45)</sup>.

### 마. 연금재정 재계산

연금계산기초의 실제상황이 변경되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또는 퇴직연금급부기준 및 재정방식이 변경되는 경우, 일시적인 적립과부족의 해소로 해결될 수 없으므로 연금재계산이 필요하게 된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부담금의 재정재계산에 대해 매 5년 또는 연금규약에서 정한 기간마다 재계산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연금규약의 변경, 명예퇴직, 정리해고 등 장래 연금재정의 균형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재계산 주기와 관계없이 부담금을 재계산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45) 다만 현재 적립초과분이 있는 경우 다음 납입부담금과 상계하도록 하는 규정만 존재할 뿐, 최대적립한도 등 적립초과시의 시정조치 사항은 없는 실정이다.

## 2. 재무건전성 규제의 문제점

지금까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및 시행령 등에 기초하여 퇴직연금의 재무건전성 규제를 살펴 본 결과, 선진국에 비해 대략 다음과 같은 측면에서 문제점을 지적할 수 있다. 첫째, 연금부채의 적립에 대해 계속기준(장래법)과 비계속기준(과거법)에 의해 추정된 금액중 큰 금액을 적립하도록 되어 있으나 사용자가 관련 법규의 규정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별도의 제재조치가 없어 사문화된 규정이 될 우려가 높다는 점이다. 또한 추정된 부채금액도 전액 적립하는 것이 아니라 근퇴법에서 정하는 수준인 60/100 이상을 적립하도록 하고 있어 기업 도산시 근로자의 수급권보호가 매우 어렵다고 할 수 있다.

둘째, 과거근무기간을 소급하여 적용하기로 한 경우의 적립금 수준은 100분의 60 이상 보다 더 완화된 100분의 60 이하의 범위 내에서 과거근무기간에 따라 상각하여 적립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완전상각이 이루어져도 100분의 40은 여전히 미상각 상태로 남을 수 밖에 없다는 점이다. 즉 과거근무 적립금 수준을 매우 완화된 수준으로 대폭 낮춤으로써 현재보다 오히려 과거에 근무한 근로자의 수급권을 인정하지 않는 문제가 있다. 결국 과거근무채무를 포함한 연금부채 전부에 대해 적립을 하더라도 100분의 40만큼의 미적립채무는 여전히 존재하기 때문에 향후 기업도산시 근로자의 수급권 보장문제가 주요 현안과제로 대두될 것으로 보인다.

셋째, 우리나라의 경우 미국 등 선진국과 달리 부담금 산출시 적용한 계산기초율을 부채평가시에도 동일하게 적용함으로써 책임준비금 등 연금부채의 평가가 적정하게 이루어지기 어렵다는 점이다. 선진국의 경우 보수적인 평가 기초율을 적용하여 연금부채를 시가평가하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나라보다 훨씬 강화된 재무건전성 규제를 도모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넷째, 우리나라의 경우 근퇴법 및 시행령, 시행규칙 등에 적립과부족에 따른 적기시정조치 규정이 존재하지 않아 실질적으로 근로자의 수급권보호를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이라는 점이다. 즉 선진국의 적립과부족에 따른 적기시정조치가 적립비율 수준 등에 따라 체계화되어 있으나 우리나라의 경우 적립비율(=자산/부채)에 따른

감독당국의 적기시정조치 규정이 존재하지 않아 매우 취약한 재무건전성 규제 형태를 보이고 있다.

## V. 퇴직연금 재무건전성규제 개선방안

최근 선진국의 퇴직연금 재무건전성 규제는 사전규제 중심의 재무건전성규제에서 점진적으로 사후규제 중심의 재무건전성규제로 전환되고 있다. 즉 과거에는 예정기초율, 적립방식 등과 같이 부담금 산출 및 연금자산 운용에 대한 사전적 규제를 통해 규제당국이 직접 재무건전성을 규제하는 방식을 지향하여 왔다. 그러나, 1990년대 이후부터 미국 등 대부분의 국가들이 연금부채를 충당할 수 있는 연금자산을 적립하도록 하는데 초점이 맞추어짐에 따라 적립금과 책임준비금을 비교하여 퇴직연금재정의 건전성을 평가하는 방향으로 재무건전성규제의 패턴이 변화하고 있다.

실제 대부분의 국가가 최저적립기준을 도입·운영하여 최저적립기준을 충족시키는 한도 내에서 부담금 산출에 관한 자율성을 확대하는 한편, 자산운용도 비율규제보다는 선관주의 원칙에 의한 자율규제를 지향하고 있다. 이와 같은 선진국의 재무건전성 규제와 달리 우리나라 퇴직연금제도는 법정퇴직금제도하의 임의선택제도라는 점, 연금계리 개념에 기초하지 않은 퇴직금제도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는 점 등으로 인해 사전적 재무건전성규제 뿐만 아니라 사후적 재무건전성 규제 또한 제대로 마련되어 있지 않은 실정이다. 즉 외형적으로는 퇴직연금제도의 성격을 띠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적·제도적 측면에서는 연금보다 저축성향이 강한 전환기적 퇴직연금제도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는 점에서 퇴직연금제도의 도입목적에 기초한 재무건전성 규제 개선이 보다 요구되고 있다.

## 1. 사전적 재무건전성 규제<sup>46)</sup>

사전적 재무건전성 규제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는 재무건전성 규제로는 책임준비금 산정에 영향을 미치는 계산기초율 설정 관련 규제, 책임준비금 평가방식, 즉 재정방식(적립방식)선택과 관련된 규제 등을 들 수 있다. 그 이유는 계산기초율의 경우 부담금 산출 및 책임준비금 평가에 필요한 요소일 뿐만 아니라 퇴직연금제도의 연속성, 즉시청산 가정에 따라 계산기초 설정에 차이가 존재하고, 책임준비금 평가방식(연금부채평가방식)에 따라 책임준비금 적립수준 또한 다양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 가. 계산기초율 설정 측면

퇴직연금 부채는 책임준비금을 산출하는 방식에 의해서도 추정규모가 달라지지만, 각종 가정에 의해서도 많은 차이를 보일 수 있다. DB형 퇴직연금이 DC형 퇴직연금과 달리 장래 지급할 급여액과 발생시기를 추계하고 이를 충당하기 위한 부담금을 산출하기 때문이다. 각종 예측을 위한 계산에 사용되는 전제가 바로 계리적 가정이라는 점에서 DB형 퇴직연금의 재무건전성은 기업의 경영여건 뿐만 아니라 금리, 주가 등 외부의 재무변수와 사망률, 퇴직률 등 통계적 가정에 의해서도 크게 영향을 주어 올바른 계리적 가정의 선정이 매우 중요하다. 사망률, 퇴직률, 입사율, 승급률 등 통계적 가정은 국민통계나 경험통계를 이용할 수 있으나, 기초율 중 특히 할인율 설정에 대한 중요성 인식이 요구된다.

DB형 퇴직연금은 적립금이 투자되어 시간의 경과에 따라 수익이 발생하여 적립금 가치가 변동하기 때문에 할인율에 해당하는 투자수익률(예정이율) 설정이 매우 중요하다. 미국 및 일본 등에서 경험한 퇴직연금 부실화 원인도 금리급락에 따른 연금부채 급증에 있으므로 보수적인 할인율 설정이 요구되고 있다. 사망률은 가입자 규모 추계를 위해 필요한데, 일반적으로 성별·연령별로 산정되며, 가입자와 연금수급자의 사망률이 차이가 존재하기 때문에 각각에 대해 달리 적용하는 경우도 있

46) 이 부문은 책임준비금 평가와 관련된 항목이다.

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우리나라 DB형 퇴직연금에서는 퇴직 시점 이후의 연금지급에 대해 언급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해당 사항이 없으나, 향후 온전한 형태의 퇴직연금으로 발전할 경우 가입자와 수급자간 예정사망을 분리가 필요하다고 본다.

이와 더불어 일반보험의 보험료에 해당하는 부담금과 감독목적으로 재무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최저적립금, 세제측면의 최대적립금 등은 산출 목적이 다르다는 점을 감안, 향후 할인율을 포함한 계산기초율이 부담금 산출, 최저적립금 산출, 최대적립금 산출시 산출 목적에 맞게 달리 적용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또한 가능한 부담금 산출 시에는 많은 재량을 부여하고<sup>47)</sup>, 최저적립금 산출시에는 재무건전성 확보를 위해 보수적인 기초율이 사용되도록 관련 규정의 제정이 요구된다. 그 이유는 우리나라의 경우 연금부채 평가이율이 부담금 산출이율과 동일한 수준에서 사용되고 있어 연금부채 평가액이 공정한 시장가치를 나타낸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이다. 즉 DB형 퇴직연금의 재무건전성을 장기간에 걸쳐 확보할 수 있도록 보수적인 입장에서 부채평가에 사용하는 이자율이 별도 결정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 나. 적립방식 선택측면

우리나라는 연금부채평가방식, 즉 부담금 계산을 위한 자원조달 방식으로 예측단위방식과 특정연령방식 선택을 일률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기업의 재무부담 및 근로자의 수 등을 감안한 다양한 적립방식의 선택은 사실상 어렵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측면에서 우리나라는 상대적으로 선진국에 비해 관련 적립방식 선택의 다양성이 부족하다고 할 수 있다<sup>48)</sup>.

이에 따라 중장기적으로 다양한 적립방식을 인정하는 방향으로 제도가 개선되고

47) 미국, 영국, 캐나다 등에서도 부담금 산출에 적용되는 예정이율에는 제한을 두지 않고, 연금계리사의 자율적인 판단에 의해 결정하고 있다.

48) 법정퇴직금제도가 존치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현실을 어느 정도 감안하여 단순한 연금제정방식이라는 점에서 근본적으로 퇴직연금제도가 발달한 미국 등 선진국과는 차이가 존재한다. 다만, 향후 법정퇴직금제도가 축소 또는 폐지되는 경우 한국형이 아닌 선진형 퇴직연금제도로의 전환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이를 고려한 연금제정방식 관련 규정이 마련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

퇴직연금 관련 적립방식 선택이 개별회사의 특성을 고려하여 판단되어야 한다는 차원에서, 법적·제도적 규정이 아닌 자율적 판단에 일임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질 필요성이 있다. 그 이유는 자기책임하의 원칙하에 자율적 판단을 중심으로 하되, 일정한 가이드라인은 계리사회와 같은 전문가 단체가 중심이 되어 마련할 필요성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이와 더불어 연금재정 방식 선택에 대한 제반 규정과 지침이 보다 체계적으로 마련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즉 연금재정 방식은 미리 선택한 방식을 계속해서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연금재정 방식의 변경이 합리적이라고 판단될 때 변경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 등을 체계적으로 보완할 필요성이 있다<sup>49)</sup>.

## 2. 사후적 재무건전성 규제

### 가. 연금재정 검증 및 적립수준 측면

우리나라도 미국 등 선진국처럼 계속기준 및 비계속기준에 의해 연금재정 검증이 매년 정기적으로 시행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즉 계속기준에 의한 재정검증에서는 매 사업년도말 적립금이 책임준비금의 일정수준이 되는지를 검증하도록, 비계속기준에 의한 재정검증에서는 매사업년도말 적립금이 비계속기준에 의한 책임준비금의 일정수준을 상회하는지를 검증하도록 하고 있다.

이와 같은 현행 연금재정 검증체계를 미국 등 선진국과 비교하는 경우 부채의 시가평가를 고려하지 않은 채 비계속기준에 의한 책임준비금을 평가하고 있다는 점과 부담금 산출이율과 동일한 이율을 적용하여 책임준비금을 평가하고 있다는 점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즉 연금재정의 검증형태만 존재할 뿐 연금계리적 측면에서 연금재정의 검증절차 등은 구체적으로 존재하지 않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에 따라 연금재정 검증시 적용되는 요율을 부담금 산출요율과 차별화하여 적용할 필요

49) 제도의 통합·분할, 기업 연금 기금의 합병·분할, 그 외 가입자 구성이 크게 변동하는 경우, 경제상황의 변동에 수반하여 장래의 가입자 구성이 변동하는 경우, 제도 내용이 변경되어 현재 사용하고 있는 방식이 부적절하다고 생각되는 경우 등이 해당된다.

성이 있으며 부채를 시가평가하여 재무건전성이 보다 확보되도록 국제연금회계제도의 도입 및 적용에 관한 규정 및 절차마련이 필요하다고 본다.

둘째, 책임준비금의 적립수준 측면에서는 현행 책임준비금의 적립수준 60% 이상(최저적립한도)을 일정유예기간을 정하여 폐지(적립의 강제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즉 근퇴법상에 있는 규정 자체를 일정기간 후 완전폐지하여 재무건전성을 보다 강화하는 것이 근로자의 수급권보호차원에서 절실히 요구된다. 현행과 같은 적립수준이 연금제도 도입초기라는 점과 퇴직연금제도로의 전환에 따른 기업의 자금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였다고 할 지라도 국제적 적합성 측면에서 조속히 시정되어야 할 부분이라 할 수 있다.

#### 나. 과거근무채무 상각 측면

현행 퇴직연금제도에서 재무건전성 규제상 가장 큰 문제점의 하나는 과거근무기간을 가입기간으로 설정한 경우의 적립금 수준은 100분의 60 이하의 범위내에서 과거근무기간에 따라 상각하도록 한 점이다. 즉 과거근무 적립금 수준을 매우 완화된 수준으로 대폭적으로 낮춤으로써 현재보다 오히려 과거에 근무한 근로자의 수급권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는 문제가 있다. 따라서 과거근로자와 현재근로자와의 형평성을 제고하는 차원에서라도 과거근무기간을 가입기간으로 설정한 경우의 적립금 수준은 당연히 100분의 100을 기준으로 하여 과거근무채무상각이 이루어질 필요성이 있다. 즉 과거근무채무에 대해서는 미상각채무를 전혀 남겨두지 않도록 적립금 수준을 설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본다. 또한 연금제도의 개정, 적립방식의 변경, 계리적 가정의 변경 등으로 인해 미적립채무가 증가되는 경우, 증가요인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상각하도록 하는 규정의 신설이 요구된다. 이와 더불어 정률상각, 균등상각 등 상각방법의 다양화문제도 재무건전성 강화 차원에서 종합적으로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 다. 적립과부족시 시정조치

지급능력 평가 결과 적립부족 현상이 발생한 경우에는 추가 부담금을 납입함으로써 적립부족 현상을 해소해야 할 것이다. 적립부족 현상이 시정되어야만 재무건전

성이 확보될 수 있기 때문이다. 적립부족시 시정조치는 재무건전성을 충족시키기 위한 중요한 과제이기 때문에 거의 모든 국가에서 이에 대한 조치사항을 두고 있다. 현행 우리나라 제도에서의 적립부족의 판단 기준은 “평가적립금 < max(계속기준에 의한 책임준비금 × 60%, 비계속기준에 의한 책임준비금 × 60%)”이다. 적립부족이 발생했을 경우 이에 대한 시정조치가 존재하지 않아 책임준비금의 사전적립 취지가 실현되기 어렵다. 따라서 적립부족시의 시정조치가 대략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이루어질 필요성이 있다.

첫째, 추가부담금의 납입의무화, 적립비율에 따른 부족액의 상각 등을 통한 적립부족액 해소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둘째, 적립부족액을 납입하지 않는 등 이행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기업에 대해서는 패널티세 및 과태료의 부과 등 법률적 규정마련으로 적절한 제재조치를 취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이다. 셋째 상장주식에 의한 부담금 납입이 가능하도록 하는 등 적립부족액 각출방법의 다양화를 적극 도모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이다. 이와 더불어 초과적립시의 시정조치차원에서 사용자의 환수조치 및 각출휴일, 사용자 부담금 납입 중지 등과 같은 방안이 체계적으로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 라. 연금재정의 재계산

연금계산기초율의 변화는 직간접적으로 연금재정의 건전성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실제 계산기초율의 적용으로 적립과부족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경우 연금재정의 균형측면에서 연금재정의 재계산을 실시하게 되고, 이를 통해 적정한 계산기초율의 적용이 이루어지게 된다. 연금재정의 재계산은 1년에 한 번씩 이루어지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연금재정의 재계산에 따른 운용비용의 증가는 기업의 부담으로 작용되기 때문에 적정한 연금재정의 재계산 주기가 설정될 필요성이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현재 5년마다 연금재정의 재계산을 하도록 규정되어 있지만 최소한 3년에 한번이 이루어지도록 명문화할 필요성이 있다. 그 이유는 연금재정의 재계산 주기가 5년 이상 장기이면 일수록 자칫 연금재정의 악화를 지속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연금재정의 재계산을 최소한 3년에 한번으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등에 구체적으로 명문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최소한 3년에 한번정도 연금재정의 재계산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계산기초율의 탄력화 및 연금재정의 건전성 차원에서 바람직하다<sup>50)</sup>. 지금까지 검토한 재무건전성 규제 개선방안의 주요내용을 단기 및 장단기로 구분하여 요약·정리하면 <표 11>과 같다. 즉 퇴직연금제도의 선진국이라 할 수 있는 미국, 일본, 영국 등의 퇴직연금 재무건전성 규제를 기초로 하는 경우 우리나라의 재무건전성 규제는 대략 <표 11>과 같은 방향으로 이루어질 필요성이 있다고 본다.

즉, 안정적인 근로자의 수급권보호차원에서 가능한 한 선진국에 준하는 재무건전성 규제 로드맵을 사전에 설정하고, 이러한 재무건전성 규제 로드맵 하에서 재무건전성 규제의 문제점을 단계적으로 보완·개선해 나아가는 자세의 전환이 절실히 요구된다.

50) 종래 일본이 시장금리가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5.5%의 예정이율을 20년까지 적용하여 기업의 연금안정화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는 점에서도 너무 과도한 연금재정의 재계산주기 설정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할 수 있다.

〈표11〉 우리나라의 퇴직연금 재무건전성규제 개선 방안

국 가	현 행	개 선 과 제	
		단 기	중장기
책임준비금 평가	- 연금부채평가이율 확일화 - 적립방식 선택규정 미비	- 산출요율의 차별화 (부담금 산출, 최소 및 최대적립금 산출) - 적립방식 선택 폭 증대 및 적립방식 관련 규정 보완	
재정검증	(형식적 의미의) 계속 및 비계속 기준 인정	- 연금부채 산정에 관한 계리기준 및 절차 설정 · 계리기준 및 지침서 정비 - 연금부채 시가평가 방법에 구체적 기준 제시 (국제연금회계기준 적용)	
적립과부족 시조치	- 적립부족시 관련 규정 부재 - 적립초과시 다음 납입부담금과 상계 가능	- 적립부족시 시정조치 마련 · 부담각출 의무화, 각출비율에 따른 상각, 연금급부액 감액 등 · 각출불이행시 법적 제재 조치 규정 신설(과태료 등)	- 적립초과시 시정조치 마련 · 최대적립한도 설정 등 - 각출휴일, 사용자에의 환원조치 등과 관련된 규정 정비
책임준비금 적립수준	책임준비금의 60% 이상	단계적 적립수준 인상 (일정기간 유예 후) 폐지	
적립비율	규정 전무	- 적립률의 엄격화	- 부금 이외의 각출 인정 · 상장주식 납입 허용
PSL상각	- 100분 60 이하의 범위내 상각(5년 상각) - 재정방식변경 등에 관련된 상각방법 및 기준 전무	- 100분의 100으로 조정 하여 상각기간 설정	- 제도 개정, 적립방식 등에 따른 상각기간 설정 - 정액, 정율 등 상각방법 규정화
연금재정 재계산	5년	3년으로 단축	

주: 단기는 현재, 중장기는 2008 ~ 2010년을 의미

## Ⅶ. 결론

우리나라 퇴직연금 재무건전성 규제를 미국 등 선진국과 비교하여 분석한 결과, 연금재정의 안정성확보를 통한 근로자의 수급권보호차원에서 현행 퇴직연금 재무건전성 규제의 개선이 시급히 요구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먼저 사전적 재무건전성 규제측면에서는 부담금 산출, 최저적립금 산출, 최대적립금 산출 목적에 따른 계산기초율 설정이 필요하며, 개별회사의 특성을 고려한 적립방식(준비금평가방식)의 선택이 이루어져 다양한 적립방식의 선택이 가능하도록 계산기초율의 차별화, 연금재정 선택 관련 규정의 보완이 필요하다. 또한 사후적 재무건전성 규제측면에서는 무엇보다도 연금재정의 검증차원에서 연금부채 산정에 대한 계리적 기준 및 절차 마련이 중요하다. 즉 어떠한 절차 및 기준에 의해 책임준비금(연금부채)를 산출할 것인가에 대한 명확한 절차 및 기준이 필요하다. 또한 연금부채의 시가평가와 관련된 국제연금회계기준의 적용방법 등에 대한 자세한 지침 마련이 요구된다.

둘째, 적립부족시 시정조치 측면에서는 부담금각출 의무화, 각출비율수준에 따른 상각기간 설정, 연금급부액의 감액 등과 같은 시정조치 규정이 보다 체계적으로 정비되어야 하며, 특히 사용자가 각출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법적제재조치 사항(과태료부과, 패널티세 부과 포함)의 신설이 요구된다. 특히나 중장기적으로는 사용자의 도덕적해이 방지 차원에서 최대적립기준(한도)를 설정함과 더불어 각출휴일, 사용자에의 환원조치, 부담금과의 상계 등과 관련된 사항도 적기시정조치 차원에서 필요하다.

셋째, 현행 책임준비금의 적립수준(각출기준)을 단계적으로 인상하되, 일정기간 유예기간을 인정한 후 조속히 폐지하는 것이 퇴직연금의 재무건전성 확보차원에서 요구된다.

또한 적립비율(지급능력비율)의 엄격화와 더불어 부금이외의 각출(상장주식에 의한 납입 허용 등)인정에 대해서도 종합적인 검토가 있어야 할 것이다. 이와 더불어 과거근무채무상각 측면에서는 현행 100분의 60 이하의 범위 내 상각규정을 100분의 100으로 재조정하여 상각기간을 설정하고 또한 제도개정, 적립방식 변경

등의 변화에 따른 상각기간의 차별화를 기하는 등 과거근무채무 상각기간 및 방법(탄력상각, 정액상각, 정율상각 등)에 대한 검토가 요구되고 있다. 특히 재무건전성 유지 차원에서 연금재계산 기간을 현재 5년에서 3년 이내로 단축하여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 참 고 문 헌

- 금융감독원,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의 재정건전성 제고방안」, 2005.4
- 동양생명 주식회사, 확정급여형 운용관리계약서의 별지2(연금계리기준서), 2005.
- 류건식·신문식, 「퇴직연금재정의 건전성 평가체계 : 근로자의 수급권보호를 중심으로」, 『사회보장연구』, 제22권 제3호(제38집), 2006. pp. 77~106.
- 류건식·이상우, 『퇴직연금제도의 재정평가체계에 관한 연구』, 보험개발원 보험연구소, 2005.3.
- 류건식·이태열, 『퇴직연금규제감독체계에 관한 연구』, 보험개발원 보험연구소, 2004.7.
- 신기철, 「기업연금제도의 재무건전성제고방안」, 『노동연구원 전문가포럼자료』, 2003.
- 이봉주, 『퇴직연금 지급보증제도의 효율체계에 관한 연구』, 보험개발원 보험연구소, 2007.
- 이재민, 「퇴직연금의 재무건전성감독모델」, 금융감독원 조사연구실, 2005.6.
- 이홍무, 「퇴직연금수급권보호의 취약성과 낮은 적립수준에 대한 선진국의 사례(下)」, 『손해보험지』, 2005.
- 일본노동후생성, 확정급부기업연금법, 시행령, 시행규칙, 2002.3.
- 内藤修治, 「年金數理」, 『日本保險計理士會』, 平成元年
- 田村正雄, 「年金財政」, 『株式會社 社會保險廣報社』, 1992.2.
- Actuarial Standard of Practice(ASP), No. 4, No. 27.
- A.W.Anderson, "Pension Mathematics for Actuaries", 3rd Edition 2006.
- ERISA Act Section 302, Regulations, Revenue Ruling, Notices, Procedures, Announcement, and Schedule B, SB, and MB(Form 5500).

Helmut Reisen, “Liberalizing Foreign Investments by Pension Funds: Positive and Normative Aspects”, *OECD Working Paper*, January 1997.

N.G.Terry and P.J.White, “The role of pension schemes in recruitment & motivation : Some survey evidence”, *Employee Relations*, Vol.19(2), 1997. pp.160 ~175.

Pension Scheme Surplus Regulations 1987([http://www.opsi.gov.uk/sil1987/uksi\\_19870352\\_en\\_1.htm](http://www.opsi.gov.uk/sil1987/uksi_19870352_en_1.htm))

## Abstract

This study analyzes solvency regulation framework of private pension between Korea and advanced countries. Results indicate that supervisors are necessary to consider the reform on the current retirement pension regulation for the protection of vesting rights by securing the solvency of pension fund.

First, ex-ante solvency regulation should be established such as actuarial assumptions and technical provisions method for firm-specific scheme. Also, risk-based approach is necessary as an ex-post solvency regulation. Pension funds have to fully funded their liability with a solvency buffer. Guidance of pension accounting is required for implementation of IFRS.

Second, statutory funding regulation is required to set out in a statement of funding principles. In case of a shortfall, the employers have to prepare a recovery plan such as amortization of actuarial deficit, complementary contribution, and etc.

In the long term perspective, maximum funding limit and prompt intervention are necessary for prevention of employers' moral hazard.

Third, supervisory authority should increase the current statutory technical provision level from 60% to 100% to ensure the financial strength of retirement pension schemes. In addition, comprehensive reviews are demanded such as the enhancement of elimination level of past service liabilities and maximum amortization period of actuarial deficit.

※ Key Words : ex-ante solvency regulation, ex-post solvency regulation, pension prompt intervention